

	<h3>학생지도위원회규정</h3>	규정번호	5-0-14
		제정일자	1992. 3. 1
		개정일자	2026. 3. 1

제1조(목적) 이 위원회는 학생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개선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하고, 의결 심의한다. (개정 2017.4.1., 2018.9.1., 2019.8.1., 2021.3.1., 2022.3.1., 2026.3.1. )

1. 학생지도 및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2. 학생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(상벌 포함)
3. 학생자치기구 봉사장학금 수혜자의 자격요건 심의
4. 학생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
5. 학생회비 예산편성,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
6. 학생자치활동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7. 학생서비스 지원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8. (삭제 2026.3.1)
9. (삭제 2026.3.1)
10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교수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 (개정 2014.10.6., 2017.4.1., 2018.9.1., 2019.8.1.)

- ② 위원장은 교무학생처장으로 하고, 위원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③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학생처에서 담당하고 간사는 담당직원으로 한다.
- ④ 학생지도위원의 임기는 학기 초 총장 결재를 통해 위촉한다.

제4조(회의소집과 의결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신속히 논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5.9.1.], (개정 2017.4.1.)

제5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-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 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-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-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- 이 규정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-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-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-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-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제정 및 개폐된 규정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 및 개폐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-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-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-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